



보도일시	배포즉시		5쪽 (붙임포함)
배포일시	2019. 2.19(화)	담당부서	전문위원실
담당자	박명준 수석전문위원 (02-721-7140) 손동희 전문위원(02-721-7152)	홍보부서	오영하 대외협력실장 (02-721-7130) 이세종 전문위원 (02-721-1032)

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-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-
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(위원장 문성현)는 2.19.(화) 17:00,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‘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(위원장: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하 위원회)’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(별첨 참조) 도출에 성공했다.
-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난 해 12.20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.
 -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.
 -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, 특히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 틀* 까지 가동,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.
- * 고위급 협의 틀: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 참여
-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,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

때보다 참여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
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

○ 위원장(이철수)은 “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
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”며, “이번 합의의
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
다”고 말했다.

- 또한 이 위원장은 “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
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‘발전공식’으로
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□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
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, 본위원회 등을
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.

별첨: 1.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1부.

2. 위원명단 1부(별도송부). 끝.

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

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.
2.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 - 아울러,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.
3.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. 이 경우,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,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다만,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, 기계고장,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,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,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4.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,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다만,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5.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.
6.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.
7.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.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.

2019. 2. 19.

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	이 철 수	_____
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	이 성 경	_____
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	김 용 근	_____
고용노동부 차관	임 서 정	_____
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	박 태 주	_____

『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』 위원 명단

구분	이름	소속	직책
위원장	이철수	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	교수
노동계 위원	정문주	한국노동조합총연맹	정책본부장
	유정엽	“	정책실장
경영계 위원	김용근	한국경영자총협회	부회장
	박재근	대한상공회의소	상무이사
정부 위원	김경선	고용노동부	근로기준정책관
공익 위원	김강식	한국항공대 경영학부	교수
	강성태	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	교수
	김성희	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	연구교수
간 사	손동희	경제사회노동위원회	전문위원